

제423회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3월6일(목)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1)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5)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3)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0)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3)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5)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 위한 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8)
2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84)
23.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류가연 외 52,5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5)
-

상정된 안건

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3
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1)	3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5)	3
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3)	3
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4)	3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3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	3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	3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	3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9)	3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3)	3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0)	3
1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3)	3
1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	3
1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	3
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5)	3
2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	4
2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8)	4
2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84)	4

-
23.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
-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류가연 외 52,5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5)
-

(09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지난 2월 12일·19일, 3월 5일에 이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처리한 후에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1)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5)
 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3)
 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4)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9)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3)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0)
 1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3)
 1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
 1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
 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95)

2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
2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8)
2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84)

○**위원장 이인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한규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안녕하십니까? 법안심사소위원장 김한규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총 2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김정재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법안의 내용들은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인선 의원, 한지아 의원, 서범수 의원, 김남희 의원, 김상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7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신성범 의원,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지원 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조치, 사건처리 관련 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의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다음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규정을 일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등의 장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건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한 3분 하면 되겠지요?

○김남희 위원 예.

제가 법안소위에서 사실 이번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 를 했었는데요. 저는 여전히 약간 법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굉장히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걱정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취지의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취지는 좋지만 사실 지금 우려되는 지점은, 아이돌봄사 민간업체들 등록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아이돌봄 관련된 민간업체들이 대부분 플랫폼 기업으로 운영이 돼서 그 기업 자체가 자기에게 소속돼 있는 아이 돌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독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기초지자체 쪽으로 권한을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우려하지 않도록 잘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조금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제도를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또 계획 같은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전체회의에 올라왔으니까 여가부에게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과연 기초지자체들이 관리 감독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이 모든 법안과 이것을 주도한 여가부에게 책임이 어느 정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고 시행을 준비하기 까지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지 계획을 잘 준비하시고 또 부모나 아이들의 우려가 없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잘 모색하시고 그 업체들과도 충분히 소통을 하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셔서 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여성부장관직무대행께서는 김남희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개정 법률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김한규 위원 저도 아이돌봄 지원법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1대부터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계속 문제됐던 부분이, 아이돌보미 육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이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정부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교육을 하신 분들이 아이돌보미로 일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과제가 왜 풀리지 않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고 여성 가족부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 아이돌봄이 필요한 수요자 입장에서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됐고 민간 육아도우미는 아이돌보미하고 달리 정부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전과라든지 건강 상태 또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가 계속 누적이 됐습니다.

저희는 일단 공공의 아이돌보미 사업 자체는 계속 확대를 해 가되 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민간 육아도우미 시장 자체는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하고 소비자들 부모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공공 아이돌보미 관련된 정부의 사업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다가 요구해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대기 시간이 상당히 많다라는 전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확한 개선책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위 소득 기준으로 일정 소득에 해당되는 분들만 정부의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계속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이돌보미들이 일정 시간은 일해야 생계유지가 가능한데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분들의 낮은 보수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1년 동안,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행할 때까지 여성가족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노력이 되지 않으면 시행도 전에 다시 한번 법 개정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법안심사소위원회장님의 당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공공 간의 그런 부분들을 장관대행께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정춘생 위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우선 제가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저는 법안소위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제 의견도 피력할 수 없는 한계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굉장히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차관님의 일정 때문에 상정된 법안이 다 심사도 못 하고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법안 심사에 더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요 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안을 낸 법안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지금 현재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정춘생 위원 그런데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정춘생 위원 그런데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의 특징을 알고 계시잖아요? 경제적으로 의존해 있고 독립할 수도 없고 그래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도 신고도 할 수 없고 피해를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알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정춘생 위원 그래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고 했는데 여가부 입장이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법과의 형평성, 국민의 법감정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저는 이게 법무부 의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가부의 입장이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말씀하신 그 취지, 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친족 성범죄의 특성도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형평성이라든가 사회적 처벌 감정 같은 부분들을…… 여성가족부는 정부에서 혼자 떨어져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법사위에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는 정부에서도 충분한 논의는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정춘생 위원 그 논의를 주도하는 게 여가부예요. 이런 법들은 법무부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성폭력 관련 법, 가정폭력 관련 법 이런 모든 법에 대해서 처리할 때 여가부는 주도해 갔고 법무부에서는 그 논쟁 과정에서 여론을 의식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말이에요. 그 주도 하는 건 여가부예요. 법무부 탓할 것도 아니고요 다른 정부의 입장은 탓할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여가부의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여가부에서 이 법안이 처리 안 됐다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친족 성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관계부처에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정춘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차관님이 잘 협조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적으로 좀 경황이 없습니다만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에 앞서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 중에서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1항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5항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6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

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의결하기에 앞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전체 조항 및 부칙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서의 문안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해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통해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개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애써 주신 김한규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금번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고 공공 아이돌봄 사업의 확대와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와 현장 관계자들의 근로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양질의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23.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류가연 외 52,5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5)
(09시27분)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서 2026년 5월 29일까지 연장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한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잠시 말씀하시지요.

○김한규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회법 125조제6항은 그 전의 5항부터 말씀드리고 나서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인데요. 원래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서 90일 내에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로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 위원장님께서 의장한테 중간보고를 해서 6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50일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위원회의 결의 없이. 그래서 지금 150일 동안 못 했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로 추가 연장을 요구하게 되는 건데요.

연장요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련 사항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청원소위를 한 번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연장 요구 사유가 적절한지 자체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기간 내에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그동안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정치적으로 여러 이슈들이 있어서 위원회를 열기 어려웠던 사정은 다 알고 있어서 이번에 한해서는 연장을 하되 5월 29일까지는 반드시 소위원회를 열어서, 또 한 번으로 부족하면 더 열어서 내용이 어떻게 됐든 검토를 하고 답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점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을 달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승인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그러면 청원심사소위원장님.

○서범수 위원 제가 청원심사소위원장이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위원장 이인선 죄송합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말씀이, 한 번도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김한규 간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3월 내에 한 번 개최해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조속한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변경이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견을 달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법안소위 관련된 위원님들 내지 위원장님께 참 감사한 것은, 세 차례나 굉장히 긴 시간을 거쳐서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앞에 굉장히 의견이 많은 법안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원하는 법안이 앞으로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법안심사소위원장님께서는 특히 위원님들이 내는 법안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굉장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어쨌든 좋은 돌봄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정책을 넘어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필수적인 국가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영숙 장관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김남근 김남희 김상우 김용만 김한규 백승아 서범수 서영교 이달희 이연희
이인선 임미애 장철민 전진숙 정춘생 조은희 한지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태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청소년가족정책실장 황윤정
여성정책국장 조민경
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대변인 최문선
청소년정책관 최은주
가족정책관 최성지

【보고사항】

○의안 회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9.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9)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25. 2. 19.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1)
이상 2건 2월 2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2025. 2. 12.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8)
2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
(2025. 2. 27.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4)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2. 28.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2. 28.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이상 3건 3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공포일자	구분
제213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 2. 27.	시행규칙